

대미식품수출업체, 미국 FDA에 식품시설 재등록해야
- FDA사이트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식품시설 재등록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대미식품수출업체들은 FDA에 등록된 식품시설을 재등록해야 함.

식품시설등록은 미국내 시설뿐만 아니라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모든 업체들의 인간 또는 동물이 소비하는 모든 식품(사료 포함)에 관련한 제조, 가공, 포장, 저장 시설 모두 의무등록사항이며 매 짝수해마다 등록된 식품시설을 재등록해야 함

FDA의 식품시설 재등록은 잠재적 혹은 실질적 생체 테러 위험, 식품매개질환 발생 등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FDA로부터 해당 식품시설의 자료를 활용, 원인을 신속히 파악하고 관련 내용을 식품시설에 신속히 통보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음

식품시설 재등록은 FDA의 웹사이트에서 기존 계정(Account ID)로 로그인하여 업체 관계자가 직접 진행할 수 있으며 기존 계정 정보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식품시설 재등록은 대미식품수출의 필수적인 사항인 만큼 관련업체들이 기한내 차질 없이 재등록을 마칠 수 있어야하며 또한 미국의 통관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자료는 본 사이트의 수출안전정보>국별통관검역>통관에서 볼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된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Q&A:

1. 올해 1월~9월 FDA에 공장시설등록을 신규로 한 업체도 10월~12월 재등록(정보갱신)을 해야하는가?

답변: 올해 9월 30일 등록업체도 10월~12월 사이에 갱신을 해야합니다.

2. 내년 등록업체는 언제 재등록하나요?

답변: 짝수년도 2016년 10월~12월 사이에 갱신합니다.

3. 어떻게 재등록 하나요?

답변: 아래의 사이트를 방문하여 재등록하시기 바랍니다.

FDA 식품시설 재등록 관련 사이트 주소 :

<http://www.fda.gov/Food/GuidanceRegulation/FoodFacilityRegistration/default.htm>

<첨부 : 식품시설 재등록 절차관련 용어설명>

- Section 1 : Type of Registration(시설등록유형 : 제조/가공, 재포장/포장, 창고 등)
- Section 2 : Facility Name / Address Information (시설이름 / 주소지)
- Section 3 : Preferred Mailing Address Information (메일링 주소)
- Section 4 : Parent Company Name / Address Information (모회사명 / 주소지)
- Section 5 : Facility Emergency Contact Information (비상 상황 발생시 연락처)
- Section 6 : Trade Names (시설을 사용하는 상표명들)
- Section 7 : United States Agent (미국내 대리인 정보)
- Section 8 : Seasonal Facility Dates of Operation (시설 운행 성수기 기간)
- Section 9 : Type of Storage (저장형태)
- Section 10A : Type of Activity Conducted at the Facility and General Product Categories - Food for Human Consumption (생산·제품유형 - 인간소비 식품)
- Section 10B : Type of Activity Conducted at the Facility and General Product Categories - Food for Animal Consumption (생산·제품유형 - 동물소비 사료)
- Section 11 :
Owner, Operator, or Agent in Charge Information (해당 시설 소유자, 운영자, 대리인 정보)
- Section 12 : Inspection Statement (FDA 시설 조사권한 동의서)
- Section 13 : Certification Statement (인증서), Registration Review (등록정보 검토)